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2월 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2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12월 15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도 욱)

□ 제안이유

- 2010. 11. 21. 오정레포츠센터 신축공사 준공예정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오정레포츠센터 건물 안에 있는 체육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 별표 1·별표 2·별표 3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오정레포츠센터를 별표 1의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
- 나. 별표 2의 전용사용료중 원미운동장 사용구분을 주간에서 오전, 오후로 변경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을 기하고 별표 2, 3의 시설별에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이 비슷한 오정레포츠센터가 등재됨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시설이 건립될 경우를 감안하여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명을 스포츠센터로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3).

다. 별표 3의 연습사용료 중 스포츠센터에 체력단련장을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시설별 체력단련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로 분리하는 것이 이용확대나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 검토하겠습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함?	○ 검토하겠습니다.
○ 소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운영이 필요할 것임?	○ 빈 시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음.
○ 별표 1의 체육시설 명칭 중 오정레포츠는 오정레포츠센터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명칭기재를 잘 못하였음. (이상 체육진흥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나. 찬성토론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91
의결 연월일	2010. 12. 15

제안년월일 : 2010년 12월 15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오정레포츠센터” 명칭이 “오정레포츠”로 잘 못 표기되어 이를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체육시설 명칭중 “오정레포츠”를 “오정레포츠센터”로 수정함.(별표 1)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중 “오정레포츠”를 “오정레포츠센터”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08.03>

부천시 체육시설(제2조관련)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일반행사	"
	야구장	야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5번지
	궁도장	궁도, 체육행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인공암벽	암벽	"
	테니스장	테니스	"
부천체육관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인조잔디구장	축구, 배구, 족구, 농구, 일반행사	"
	보조운동장	축구, 족구, 씨름, 일반행사	"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수영장	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오정레포츠센터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수영장	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송내사회체육관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서촌다목적체육관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6번지
테니스장	원미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2번지
	복사골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2번지
	제1배수지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97-5번지
성무정	주경기장	궁도,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2-26번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8번지
원미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3번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육상, 축구, 족구, 농구, 인라인트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71번지
	테니스장	테니스	"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축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천연잔디구장	축구,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산456-1번지
	풋살경기장	풋살	"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축구, 일반행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번지 일원

[별표 2] <개정 2009.08.03>

전용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천연잔디구장	조기	300,000	500,000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보조경기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야구장	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인공암벽	주간	40,000	60,000	
시민운동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원미운동장		오전	40,000	60,000	150,000	250,000	
		오후	40,000	60,000			
		야간	80,000	120,000			
부천체육관	체육관	주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400,000	550,000	
	체력단련장	주간	60,000	80,000	100,000	150,000	
		야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보조운동장	오전	20,000	30,000	50,000	80,000	
		오후	20,000	30,000			
송내사회체육관		오전	40,000	60,000	60,000	80,000	
		오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000	160,000	
스포츠센터	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수영장	09:00~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09:00~12:00	140,000	182,000	280,000	364,000	
		12:00~18:00	300,000	390,000	600,000	78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30,000	40,000			
		야간	45,000	60,000			
공도장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인조잔디구장	정규경기장 (100m×64m 상) 이	조기	40,000	50,000		
		주간	60,000	80,000	150,000	200,000
		야간	160,000	180,000	250,000	300,000
	중경기장 (70m×45m 상) 이	조기	30,000	40,000		
		주간	40,000	60,000	120,000	170,000
		야간	140,000	160,000	220,000	270,000
	소경기장 (70m×45m 만) 미	조기	20,000	30,000		
		주간	30,000	40,000	100,000	150,000
		야간	130,000	140,000	200,000	250,000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 등을 말한다.
2.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제외)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3.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 야구장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인조잔디구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5.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한다.

[별표 3] <개정 2009.08.03>

연습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1인당 사용료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1회 2시간	500	4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팀 1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야구연습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인공압벽	1회 2시간	1,500	1,200
시민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원미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부천체육관	체육관	1회 2시간	2,500	2,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송내사회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스포츠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수영장(1회)	일반	3,000	2,4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노인, 어린이		2,000	1,600	
서촌다목적체육관		1회 2시간	1,000	800
테니스장	평일	1회 2시간	2,500	1면 10,000
	휴일	1회 2시간	3,500	1면 14,000
	평일 야간	1회 2시간		1면 15,000
	휴일 야간	1회 2시간		1면 21,000
궁 도 장		1회 2시간	1,200	1,000

1.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 등을 말한다.
2. 단체사용료의 경우 축구경기 및 야구경기는 팀당으로, 테니스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밖에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3.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연습사용을 허용한다.
4.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개인) × 20일 (단, 테니스 월사용료는 30,000원)
5.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배 이내
6.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은 대회별 5일 이내로 한정한다.
7.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증표 표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사용요금으로 인정한다.
8. 2명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